

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
제정	1983.	6. 29	규칙 제 94호
개정	1987.	3. 27	규칙 제 207호
	1989.	4. 29	규칙 제 292호
	1991.	1. 24	규칙 제 372호
	1992.	6. 11	규칙 제 452호
	1994.	12. 13	규칙 제 600호
	2008.	6. 16	규칙 제 938호(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)
	2008.	12. 9	규칙 제 946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	2009.	9. 28	규칙 제 975호
	2010.	12. 15	규칙 제 99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3.	3. 13	규칙 제1052호
일부개정	2014.	10. 17	규칙 제1090호(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5.	12. 11	규칙 제1120호(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 광명시 공 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6.	9. 8	규칙 제1135호(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일부개정	2016.	9. 27	규칙 제1137호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)
일부개정	2017.	6. 1	규칙 제1157호
일부개정	2017.	9. 20	규칙 제1168호
일부개정	2018.	7. 31	규칙 제1184호(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)
일부개정	2019.	12. 20	규칙 제122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광명시 수도급수 조례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2. 20]

제2조(정의) “호별”이라 함은 “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별”을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9. 9. 28]

제3조(급수공사의 신청) ① 「광명시 수도급수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광명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, 2019. 12. 20>

1.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
2. 삭제 <2009. 9. 28>
3. 삭제 <2017. 9. 20>
4. 삭제 <2017. 9. 20>

5. 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락서(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)

② 삭제 <2009. 9. 28>

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「광명시 민원처리 규정」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6. 16, 2009. 9. 28, 2016. 9. 8>

④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광명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주민등록 등재자로서 무허가 건물 거주사실이 확인되고 급수공사시행에 따른 사유지 저촉 등 장애요인이 없는 경우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09. 9. 28>

제4조(급수공사 승인)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승인은 기설수도 사용자 등의 급수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제5조(급수공사의 범위)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 시설공사로 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제6조(준공검사) 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가 급수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, 2014. 10. 17>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관이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9. 9. 28>

제7조(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) ①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급수공사(신설, 개조 또는 수전분리공사)의 공사비는 실제 소요되는 거리 미터 당 공사비를 산출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1.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부터 산출한다.
2. 동일지역에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각 개인별 기본연장을 합산하고 추가되는 연장도 합산산정한다.

3. 신청인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를 실시하고, 기존관이 없을 경우에도 신청인의 부담으로 급수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산정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 또는 인건비(기획재정부고시)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적용 산출한다. <개정 2009. 9. 28, 2018. 7. 31>

제8조(공사비의 납부)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및 시 부담금으로 구분 납부한다.
<개정 2009. 9. 28>

제9조 삭제 <2009. 9. 28>

제10조 삭제 <2009. 9. 28>

제11조(급수공사의 하자책임) ①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, 후단삭제 2014. 10. 17>

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급수장치의 개전·중지 및 폐전신청)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개전·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제13조(수도사용자 등의 명의변경) ①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서면이나 구두, 유선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, 2014. 10. 17>

②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신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다.

제14조(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) ① 시장은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개시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용료납부의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.

③ 삭제 <2009. 9. 28>

[제목개정 2009. 9. 28]

제15조(수도계량기의 검침) 수도사용량의 검침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검침부대장(별지 제8호 서식)에 정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제16조(요금의 계산방법 등)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구경별 요금은 사용수량에 관계없이 모든 급수설비에 적용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② 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, 신설·폐전·급수중지·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09. 9. 28>

③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.

제17조(요금의 징수) 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한,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. <개정 94. 12. 13, 2009. 9. 28>

② 급수사용자 등은 납입고지서에 의한 수도사용료를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94. 12. 13>

제18조(체납요금 및 납부독촉)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한다.

제19조(운반급수) ① 시장은 급수구역 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규정의 운반급수의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급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설 급수설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. 다만,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9. 28, 2014. 10. 17>

제20조(사용량의 인정) ① 조례 제26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정례일 또는 동조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,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조정한다. 다만, 추정조정은 매월은 3회,

격월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 전에 대하여는 가족수 (또는 종업원수), 시설규모,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. 다만,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시간단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자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④ 조례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대해서 요금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방바닥, 벽면속 등 지하의 누수인 경우에는 조례 제44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에 공사관련 사진(변기 등은 제외)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 <신설 2009. 9. 28>

⑤ 조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대한 요금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신설 2009. 9. 28>

제21조(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) ① 삭제 <2014. 10. 17>

② 조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청서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. 또한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. <개정 2016. 9. 27>

[전문개정 2009. 9. 28]

제22조(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)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2호 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9. 28>

③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 주어야 한다.

제23조(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)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한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용으로 변경 사용

할 수 있다.

② 제1항 규정의 사용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1회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20>

③ 시장은 임시급수 종료기간 후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.

제24조 삭제 <2013. 3. 13>

제25조(요금 등의 감면)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한 수급자 및 다자녀 가정에게는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 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. 다만,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. <개정 2019. 12. 20>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요금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3. 3. 13]

[제목개정 2019. 12. 20]

제26조 삭제 <2017. 6. 1>

제27조(옥내배관의 개량지원) ① 조례 제37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배관 개량 보조금을 지원하되, 지원율은 교체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50퍼센트 이하, 세척·갱생공사의 경우는 총공사비의 80퍼센트 이하로 하며, 주택별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4. 10. 17>

1. 단독주택 : 150만원 이하
2. 다가구주택 : 200만원 이하
3. 공동주택 : 세대당 80만원 이하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주택
2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

3.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9. 12. 20>

1. 재개발, 재건축,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 건축물

2. 「주택법」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 수도계량기로부터 세대별 수도계량기까지의 배관

④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0. 17, 2018. 7. 31>

1. 제2항제1호 및 제2호

2.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, 가구당 평균면적 60제곱미터 미만의 다가구주택,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
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는 접수순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3. 3. 13]

제28조(정수처분 유예) 조례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유예한다.

2. 제1호에 따른 유예대상자 거주지가 다가구, 다세대, 공동주택일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유예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3. 3. 13]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7. 3. 27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89. 4. 29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1. 1. 24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2. 6. 11>

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4. 12. 13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08. 6. 16 규칙 제938호,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9 규칙 제946호,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② 까지 생략

③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제1호 중 “수도과”를 “상하수도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안내 제3호 중 “시청 수도과”를 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안내 제4호 중 “수도과”를 “상하수도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 서식 수도안내 제6호 중 “시청 수도과”를 “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 서식 독촉안내 제3호 중 “수도과”를 “상하수도과”로 한다.

④ 생략

부칙 <2009. 9. 28 규칙 제97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20조제4항은 2010년 3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2010. 12. 15 규칙 제99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

⑪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 제1호 중 “상하수도과”를 “수도과”로 한다.

별지 제11호 서식과 별지 제12호 서식 결재란 중 “요금담당”을 “팀장”으로 한다.

⑫ 부터 ④ 까지 생략

부칙 <2013. 3. 13 규칙 제1052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4. 10. 17 규칙 제1090호, 규제개혁을 위한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
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부칙 <2015. 12. 11 규칙 제1120호,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위한
광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8 규칙 제1135호,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
명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7 규칙 제1137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동 주민센터 명칭변경에 관
한 사항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주민센터”를 “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별지 제10호 서식 중 하단의 “주민센터”를 “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”로
한다.

④ 부터 ⑥ 까지 생략

부칙 <2017. 6. 1 규칙 제115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9. 20 규칙 제1168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18. 7. 31 규칙 제1184호, 규칙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규칙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9. 12. 20 규칙 제1224호>

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<개정 2017. 9. 20>

급수공사시행신청서

-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「광명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함.
-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공도에 매설된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귀시에 기부 채납함.

수전(신청)위치	광명시		
급수종별	가정, 일반, 대중탕	공사구분	신설(신설, 임시, 수전분리) 개조(이설, 증설_급수관·계량기,철거)
급수전수 및 구경	가정, 일반, 대중탕 ____mm ____개 가정, 일반, 대중탕 ____mm ____개 가정, 일반, 대중탕 ____mm ____개		
현급수실태	지하수, 간이상수도 기타()	월소요량	
건물허가번호 (신축시)		건물허가년월일 (신축시)	
20 . . . 신청자 주소 : 성명 : (인) 생년월일 : 연락처 : 광명시장 귀하			
첨부 <u>토지 및 건물소유자의 급수공사승낙서(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)</u>			

[별지 제2호 서식] 〈개정 2010. 12. 15〉

광 명 시

수 도

수 신

제 목 :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 통보

1. 귀하가 신청하신 급수공사시행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「광명시 수도 급수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년 월 일자로 승인하오니 아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수도과 경유하여 납입고지서 및 공채교부서를 교부받아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라며

2. 만약 위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는 같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급수공사비 고지서 1부. 끝.

광 명 시 장 (인)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09. 9. 28>

준 공 계

감독관경유

공 사 명:

공 사 위 치:

계 약 금 액:

계 약 연 월 일: 년 월 일

착 공 연 월 일: 년 월 일

준 공 기 한: 년 월 일

실준공연월일: 년 월 일

첨 부 서 류: 준 공 사 진

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,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, 만약 공사의 시공,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 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:

상 호:

성 명:

광 명 시 장 귀하

[별지 제5호 서식] 〈개정 2009. 9. 28〉

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

공사명 : _____

년 월 일

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공사자설계도서·제시방서·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.

년 월 일

공사감독관

직명 :

성명 :

광 명 시 장 귀하

[별지 제6호 서식] <개정 2014. 10. 17>

[illegible]

1. 급수전소제지 : 광명시
2. 업 종 : 용 수전번호 :
3. 수용가 번 호 : 관리번호 : 구경 : 미리미터
4. 소 유 자 : 최종지침 :
5. 사 유 :

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설비를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18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급수(개전, 폐전, 휴전) 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: (인) (관계)
주 소 :
전 화 :

광명시장귀하

[별지 제7호 서식] <개정 2014. 10. 17>

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

1. 급수전소제지 : 광명시
2. 업 종 : 용 수전번호 :
3. 수용가 번호 : 관리번호 :
4. 구 사 용 자 :
5. 신 사 용 자 : 전화번호 :

상기와 같이 명의변경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인)

광명시장귀하

[별지 제9호 서식] 〈개정 2013. 3. 13〉

(용) 상수도 옥내누수 요금 조정 신청서				
수 용 가	급 소	수 재	전 지	
	성	명		전 화 번 호
	관 리 번 호		수 전 번 호	
	누 수 기 간			
	누 수 위 치			
	누 수 원 인			
상수도 옥내누수가 발생하여 「광명시 수도급수 조례」 제26조제5항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의 누진 적용 분을 옥내누수 이전 평균 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조정 받고자 신청합니다. 구비서류 : 1. 공사관련 사진 2. 공사내역 영수증 년 월 일 신 청 자 : (인) 광 명 시 장 귀하				

[별지 제10호 서식] <개정 2016. 9. 27>

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(신규·변경)

일련번호 :

접수번호 :

급수전소재지 : 광명시

성 명 :

전화번호 :

수용가 번 호	동	분구	일련 번호	지번	관리 번호

상기수용가는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()과 가정용()세대가 함께 급수되고 있으므로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제2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가구분할 적용을 신청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※ 기존 업종 : , 가구수 :)

세대주명		세대주명		세대주명		※ 일반용과 가정용 분할 부과 해당자만 기재함
1		6		11		
2		7		12		
3		8		13		
4		9		14		
5		10		15		
						업소관리자
						연 락 처
						건물 층별
						업종 기재

접 수 일 자	접 수 자	
	직	성 명
20 년 월 일		

수도사용료 가구분할적용 신고서접수증

급수전소재지 : 광명시

성 명 :

전화번호 :

수용가 번 호	동	분구	일련 번호	지번	관리 번호

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20 년 월 일

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접수담당자 : 직

성 명 : (인)

광 명 시

동 장

[별지 제11호 서식] 〈개정 2015. 12. 11〉

수도미터기 시험 신청서

수용가번호				수전번호		
급수전소재지						
계량기구경	밀리미터	기물번호			지 침 수	
시 험 료					관리번호	
사 용 량 변 동 사 항						
전월사용량	사 용 료	금월사용량	사 용 료	비 고		

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제28조제1항에 의거 시험신청 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

신 청 인 : (인) 생년월일 :

담당자	팀 장	과 장

보 관 증

수도미터 밀리미터
상기물품을 시험관계로 보관함

20

담 당 (인)

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

[별지 제14호 서식] 삭제 <2014. 10. 17>